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74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송기헌·조승래·이기헌

김태년 · 강훈식 · 김영배

민병덕 · 정성호 · 주철현

문진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지하수영향조사 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

그런데, 지하수영향조사가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지하수 개발 · 이용 허가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며,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그 심사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있어,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환경부장관에게 하도록 하고,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며,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과정에서의 주민의 신뢰와 수용성 을 높이고자 함(안 제7조 등).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게 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작성지침·작성내용"을 "작성지침·작성내용" 으로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을 허가하려면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이나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용도가 아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공고 및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본다.

제3조(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위하여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7조(지하수개발 · 이용의 허가) 제7조(지하수개발 · 이용의 허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지 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 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 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 수자원공사에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 내용에 반영하 서를 심사하게 하여-----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 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야 하다. <신 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 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을 허가하려면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 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신 설>

③ ~ ⑦ (생 략)

⑧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 사의 항목·조사방법·평가기 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u>작성지</u> 침·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 제록)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야 한다. 다만, 공장이나 그	그 밖
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븨 생
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	·되는
용도가 아닌 경우로서 대	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고 및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u>은 대</u>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따
라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
한다)・군・구의 조례로	정한
<u>다.</u>	
<u>⑤</u> ~ <u>⑨</u> (현행 제3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u> </u>	
<u>작성</u>	지침
<u>• 작성내용 • 심사방법</u>	
<u>• 작성내용 • 심사방법</u>	
<u>• 작성내용 • 심사방법</u> 	
 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환경부장관--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